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 총괄인력, 읍면동 주민자치인력, 간호인력 증원으로 찾아가는 보건·복지서비스 확대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조성 추진
-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수요정책추진 필수 인력 증원 및 행정 수요 확대에 따른 인력 증원을 통한 효율적 조직운영 도모

3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
 - 1,697명 → 1,774명(+77명)
 - 집행기관 : 1,669명 → 1,746명(+77명)
 - 의회사무기구 : 28명(변동없음)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(안 별표3)
 - 정원 총계 : 1,697명 → 1,774명(+77명)
 -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인력 증원 : +34명

- 중앙정부 국가수요정책 추진 인력 증원 : +25명
- 지역 행정수요 확대 추진 인력 증원 : +18명
- 일반직 계 : 1,659명 → 1,735명(+76명)
 - 6급 이하 : 1,549명 → 1,625명(+76명)
- 연구직 계 : 3명 → 4명(+1명)
 - 연구사 : 3명 → 4명(+1명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9조 및 제30조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정원의 총수를 현행 1,697명에서 77명(6급 이하 일반직 76명, 연구사 1명) 증원된 1,774명으로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본 조례의 개정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정원에 반영하고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최소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,
-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,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고 합리적인 인력배치가 요구됨.
- 이번 정원 조정은 2019~2020년 기준인건비 반영 범위 내에서 증원하는 것으로 2020년 재정소요액은 약 60억원으로 추계됨.